

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23. 9. 6.
발 의 자 : 대구광역시의회
운 영 위 원 장

1. 개정이유

가. 형식적인 법률고문 제도의 운영실태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법률자문의 실효성을 도모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법률고문 정원 확대(안 제2조)
- 나. 법률고문 수당체계 개선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: 붙임(「지방자치법」)
- 다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

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3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. 다만, 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.

1. 정액고문료 : 월 15만원(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)
2. 법률자문료 : 건당 10만원(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)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위촉) ① 대구광역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변호사중에서 <u>1인</u>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5조(수당) ① <u>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50,000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 단, 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위촉) ①----- ----- ----- <u>3인</u>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수당) ① <u>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1. 정액고문료 : 월 15만원(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)</u></p> <p><u>2. 법률자문료 : 건당 10만원(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)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